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정 80. 5. 26 훈령 제244호	개정 05. 8. 11 훈령 제1000호	개정 21.01.26 규정 제2431호
개정 82. 11. 11 훈령 제308호	개정 09. 6. 4 훈령 제1279호	개정 21.07.16 규정 제2493호
개정 84. 10. 22 훈령 제353호	개정 09. 11. 16 훈령 제1320호	개정 22.01.21 규정 제2532호
개정 85. 11. 15 훈령 제371호	개정 10. 2. 26 훈령 제1346호	개정 23.05.17 규정 제2630호
개정 87. 10. 13 훈령 제426호	개정 10. 6. 10 훈령 제1373호	개정 24.12.05 규정 제2811호
개정 98. 4. 16 훈령 제699호	개정 10. 12. 08 훈령 제1406호	타규정개정 25.12.29. 대학원 학칙 제321호
개정 90. 10. 31 훈령 제500호	개정 11. 2. 18 훈령 제1419호	개정 26.05.29 규정 제2959호
개정 93. 1. 13 훈령 제556호	개정 12. 2. 27 훈령 제1514호	
개정 95. 9. 1 훈령 제616호	개정 12. 5. 18 훈령 제1537호	
개정 97. 3. 1 훈령 제657호	개정 12. 12. 21 훈령 제1647호	
개정 98. 12. 22 훈령 제730호	개정 13. 2. 26 훈령 제1659호	
개정 00. 1. 27 훈령 제771호	개정 13. 6. 12 훈령 제1689호	
개정 00. 12. 1 훈령 제805호	개정 14. 2. 20 훈령 제1733호	
개정 01. 6. 13 훈령 제826호	개정 14. 8. 20 훈령 제1767호	
개정 02. 3. 14 훈령 제876호	개정 15. 1. 14 훈령 제1797호	
개정 02. 12. 13 훈령 제906호	개정 18. 2. 28 훈령 제2105호	
개정 04. 1. 17 훈령 제943호	개정 18. 9. 20 훈령 제2223호	
개정 05. 3. 24 훈령 제986호	개정 19. 8. 1 훈령 제2292호	
개정 05. 6. 10 훈령 제991호	개정 19. 12. 26 훈령 제2328호	
개정 05. 7. 8 훈령 제994호	개정 20. 12. 16 규정 제242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 2 조 삭제 <2023. 5. 17.>

제 3 조(면접고사) 면접고사는 전공 지식에 대한 습득 정도와 학생으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한다. <개정 1999. 11. 30, 2023. 5. 17.>

[제목개정 2023. 5. 17.]

제 4 조 삭제 <2023. 5. 17.>

제 5 조(지원)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자는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박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98. 12. 22)

②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박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98. 12. 22, 04. 1. 17)

③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7. 16., 24.12.05, 25.12.29.>

④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자는 지원학과 소속 전임교원·배우자의 직계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신설 2020. 12. 16., 2021. 7. 16>

제 3 장 성적평가 및 교과목 이수 등

제 6 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시험 성적, 실험 및 연구 보고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교과목별 성적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성적 등급 C⁺ 이상을 급제로 한다. (12. 2.27)

등 급	평 점	비고 (100점만점 기준)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F	0	70점 미만

③ 교육과정에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락만 구분하며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한다.

제 7 조(학과 시험)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기말 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조(협동 강의) ① 본 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고, 총 취득학점은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02. 12. 13, 21.01.26.)

제 9조(해외유학)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외국 대학(교)의 대학원(공인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대학)에 유학하여 수학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에 유학 계획서와 해당 대학에서 발행하는 유학 승인서 각 2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학한 자가 유학기간 중에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12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인정(02. 12. 13, 21.01.26.)
2. 이수과목, 학점 및 성적 인정은 「전북대학교와 타 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02. 3. 14, 13. 2. 26)
3. 유학 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되, 학점취득을 위한 유학이 아닐 때에는 휴학 처리
4. 유학기간 중에도 「전북대학교와 타 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02. 12. 13, 13. 2. 26)

제10조(선수 과목) ①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사학위과정과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학한 자는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선수과목 학점을 학사학위과정에서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동일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00. 12. 1, 05. 3. 24)

②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 석사학위과정과 상이한 학과(전공)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선수과목 학점을 학·석사학위과정에서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00. 12. 1, 04. 1. 17, 11.2.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은 전공과목 이수에 앞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이수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과목과 전공과목을 동일학기에 이수할 수 있다.(00. 12. 1)

④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선수 과목 지정 결과를 입학 후 2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수과목을 면제한다.(98. 12. 22)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항 신설 13. 2. 26)

제11조(전적 학점) ① 학생이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 인정은 석사 학위 과정은 9학점 이내로, 박사 학위 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업 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학점 취득) ① 학생은 매학기 1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10.2.26, 12.5.18, 13.2.26, 21.01.26.)

② (삭제 14.02.20)

③ 논문연구 교과목은 상한학점 예외과목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1.01.26.)

제13조(타 학과 과목의 이수) 수료에 필요한 전공 학점을 석사학위과정은 16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25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 본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타 학과 또는 타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14.02.20, 18.02.28, 21.01.26.)

제13조의1(학과(전공)변경) 지도교수가 학과(전공) 소속을 변경하거나 타 학과(전공) 겸임을 하는 경우, 동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면 지도교수와 동일한 학과(전공)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3. 6. 12)

제13조의2(전과)(신설, 19.12.26)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1. 전과신청서
2.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단, 지도교수가 미정일 경우 학과 주임교수 동의서)
3. 성적증명서

② 전과는 일반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과의 전과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학과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소속 전공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변경 학과 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설강 및 수강) ① 학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석사 학위 과정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강 자격은 본 대학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로 한다.(12. 2. 27)
2. 학기당 수강 학점수는 9학점 이내로 한다.(02. 12. 13, 21.01.26.)

② (삭제 13.2.26)

제15조(담당교과목 수) 교과목의 담당은 1인당 매 학기 1교과목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1과목을 추가로 담당할 수 있다.(10.2.26)

제 4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16조(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기준) ①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각 과정 별로 전공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② 종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교과학점 18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③ 학칙 제25조 제2항 및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의 면제기준은 [별표1]과 같다.(02. 3. 14, 10. 6. 10)

제16조의 2(제2외국어 시험) 학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외국어 시험을 추가하고자 하는 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02. 12. 13, 신설)

제17조(출제 및 채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은 본교 전임 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영어는 해당 학과별 전임교원이 담당한다.(02. 12. 13)

제17조의2(시험의 유효기한)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의 유효기한은 석사학위과정 수료후 6년, 박사학위과정 수료후 8년까지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00.12.1)

② 시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석사학위과정 6년, 박사학위과정 8년으로 한다.

제 5 장 학위논문

제18조 (삭제)

제18조의 1(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심사신청일 기준으로 석사는 6개월, 박사는 1년 전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0.2.26, 10.12.08)

제18조의 2(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① 학칙 제38조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는 학생의 학위 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연구를 지도하여야 한다.(10.2.26)

②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지도교수의 경우 비전임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10.2.26)

③ 대학원생이 소속 학과 전임교원·배우자의 직계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해당 전임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6.)

제19조(학위논문 심사신청) ①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석사 학위논문은 매년 5월 15일 및 11월 15일까지, 박사 학위논문은 매년 3월 30일 및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지도 교수 추천서 1부.
3. (삭 제) (02. 12. 13)
4. 심사용 논문 3부(박사 학위논문은 5부)
5. (삭제)98. 12.22
6. 학술지 게재 논문 별쇄본 각 1부.(박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에 한함)
7.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별표 3] 로 한다.(2010.12.08)
8.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 1부.(15.01.14)
- ② 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2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발표학술지의 수준과 발표인원별 인정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98. 4. 16, 01. 6. 13)

제20조(논문의 공개발표)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자는 계열 또는 학과별로 실시하는 논문 발표회에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학술지의 수준과 발표 인원별 인정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01. 6. 13)

제21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은 [별표 2]의 학위논문 작성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부,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4부와 논문내용이 수록된 학위논문 최종 원문파일을 도서관홈페이지의 학위논문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학위논문원문파일 제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학과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은 4부, 박사학위 논문은 5부(98.12.22, 02.3.14, 05.6.10, 05. 7. 8, 09. 6. 4, 09.11.16, 10.2.26, 19.08.01)

부 칙(80. 5. 26 훈령 24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외국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 의거 인정하되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 칙(82. 11. 11 훈령 30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84. 10. 22 훈령 35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85. 11. 15 훈령 37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198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9월 응시자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87. 10. 13 훈령 4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0. 31 훈령 5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 13 훈령 556호)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9. 1 훈령 제6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97. 3. 1 훈령 제65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변경 전 학위수여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2에 불구하고 승인된 기한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98. 4. 16 훈령 제69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9조 제2항은 1998년 3월 학위논문심사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12. 22 훈령 730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선수과목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00. 1. 27 훈령 제7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2. 1 훈령 제80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6. 13 훈령 제8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3. 14 훈령 제87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12. 13 훈령 제9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 17 훈령 제9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3. 24 훈령 제98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6. 10 훈령 제9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7. 8 훈령 제99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8. 11 훈령 제10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6. 4 훈령 제12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1. 16 훈령 제13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2. 26 훈령 제13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6. 10 훈령 제13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2. 08 훈령 제14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2. 18 훈령 제14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2. 27 훈령 제15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5. 18, 훈령 제153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학기라도 논문연구 3학점을 취득한 자는 제12조 제1항의 논문연구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12. 12. 21 훈령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2. 26 훈령 제165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 제6항, 제12조 제1항 및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 폐지되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수 제한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3. 6. 12 훈령 제16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2. 20 훈령 제173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논문연구 학점(3학점)은 수료 학점에는 포함하되, 의무이수 학점에서는 제외한다.

부 칙(14. 8. 20 훈령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제1학기 기준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014학년도 후기 종합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부 칙(15. 1. 14 훈령 제1797호)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8. 02.28 훈령 제210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09.20 훈령 제222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08.01 훈령 제22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12.26 훈령 제23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12. 16 규정 제24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01. 26. 규정 제24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의 논문연구 교과목 상한학점 예외과목 지정은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2493호, 2021. 7.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532호, 2022. 1.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630호,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2811호, 2024. 12.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타규정개정 대학원 학칙 제321호, 2025.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959호, 2026. 5.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04.01.17, 09.06.04, 10.06.10, 18.09.20, 21.01.26.,26.5.29.)

외국어 시험 면제 인정기준

1. 공인 외국어시험의 인정기준

외국어명	시험명	계열(과정)	면제기준	비고
영 어	TOEFL	인문·사회	520점(CBT190점,IBT68점) 이상	석·박사 동일
		인문(영어영문, 영어교육)	600점(CBT250점,IBT100점) 이상	
		자연과학, 공학, 의학, 협동과정	500점(CBT173점,IBT61점) 이상	
		예·체능	400점(CBT97,IBT32점) 이상	
	TOEIC	인문·사회	700점 이상	석·박사 동일
		인문(영어영문, 영어교육)	850점 이상	
		자연과학, 공학, 의학, 협동과정	670점 이상	
		예·체능	600점 이상	
	TEPS	인문·사회	360점 이상	석·박사 동일
		인문(영어영문, 영어교육)	450점 이상	
		자연과학, 공학, 의학, 협동과정	335점 이상	
		예·체능	300점 이상	
	IELTS	인문·사회	6.0등급 이상	석·박사 동일
		인문(영어영문, 영어교육)	7.0등급 이상	
		자연과학, 공학, 의학, 협동과정	5.5등급 이상	
		예·체능	5.0등급 이상	
	TOEIC SPEAKING	인문·사회	IM2 이상	
		인문(영어영문, 영어교육)	IH 이상	
		자연과학, 공학, 의학, 협동과정	IM1 이상	
		예·체능	IL 이상	
	OPIc	인문·사회	IM2 이상	
		인문(영어영문, 영어교육)	IM3 이상	
		자연과학, 공학, 의학, 협동과정	IM1 이상	
		예·체능	IL 이상	
독 어	ZDaF	전 계열	합격자	박사 (제2외국어에 한함)
불 어	DELF	전 계열	Unit A1-A4 합격자	
중 국 어	신HSK	전 계열	6급 이상 합격자	
	BCT	전 계열	5급 이상 합격자	
일 어	JPT	전 계열	600점(3급) 이상	
서반아어	DELA	전 계열	C급 이상 합격자	
한 국 어	한국어 능력시험	전 계열	5급 이상 합격자	석·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2. 입학시험 우수자 인정기준

면 제 기 준	비 고
전기 입학시험에서 영어시험성적이 전체 합격자의 상위 10% 이내인 자. 다만, 후기 입학시험의 경우 전기 면제 대상의 기준 점 이상 취득한 자.	석·박사 동일

3. 한국어 연수과정 이수 우수자 인정기준

면 제 기 준	비 고
본교 언어교육부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석·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본교 언어교육부에서 영어 연수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드래곤프로젝트 해당자에 한함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별표 2] (2019.08.01.)

석사·박사 학위논문 작성요령

1. 규격

- 가. 논문의 규격은 B5판(가로 182mm×세로 257mm)으로 한다.
- 나. 표지의 측면 세로쓰기를 제외하고, 가로쓰기(좌 → 우)를 한다.
- 다. 제출용 논문표지는 석사논문 표지의 경우 회색 연질표지의 흑색으로 인쇄하고, 박사논문 표지는 흑색 경질표지의 금박문자로 인쇄한다.

2. 조판요령

가. 외표지(별지서식 1)

- 1) 논문 제목과 성명 등 기재사항은 한글(국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목의 경우 의미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자(漢字) 및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도 있다.
- 2)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외국어로 표기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한다.
- 3) 논문 제목이 한 줄로 표기할 수 없을 때에는, 둘째 줄은 중앙에 균형있게 맞추어야 한다.
- 4) 부제(副題)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아래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5) 논문 발간년도는 학위수여일을 표기한다.
- 6) 기타 외표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균형되게 배열 인쇄한다.

나. 표지 측면(별지서식 1)

- 1) 기재내용 : 학위논문제목, 논문 학위수여일, 성명
- 2) 표지 측면은 세로로 표기한다.
- 3) 논문 제목은 한글(국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미 전달 목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자(漢字) 및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도 있다.
- 4) 논문 부제는 표기하지 않는다.(국문 제목만 표기)
- 5) 아라비아 숫자로 세로로 표기한다.

다. 속표지(별지서식 2)

- 1) 외표지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2) 외국어 논문 제목은 논문 부제 아래의 중앙 부분에 표기한다.

라. 제출지(별지서식 3)

- 1) 외표지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2) 지도교수 성명은 논문제목 아래의 중앙 부분에 표기한다.
- 3) 제출확인문구는 지도교수 성명 아래의 중앙 부분에 표기한다.
- 4) 논문 제출일은 “논문심사계획”의 심사용 논문 제출일 중 첫날을 표기한다.

마. 인준지(별지서식 4)

- 1) 인준지의 서명과 날인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의 인준은 소속 및 직급을 표기하며, 증명은 날인(捺印)으로 한다.
- 3) 논문 인준일은 “논문심사계획”상의 논문 결과 보고일을 표기한다.

바. 제출

- 1) 학위논문은 심사완료 후 본 논문 제출일 전까지 중앙도서관에 학위논문 원문파일을 On-Line 제출한다.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입력하여야 함)
- 2) 원문파일제출확인서 1부 및 학위논문저작권동의서 1부를 학위논문 책자 제출 시 제출한다.
- 3) 학위논문 책자 제출부수 : 석사(3부), 박사(4부)
법학과의 경우 석사(4부), 박사(5부)

사. 본문

- 1) 본문은 38자 × 25행 정도로 인쇄한다.
- 2) 본문 분량은 논문 규격(가로 182mm×세로 257mm)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한다.
- 3) 본문내용 : 글자크기 11pt 정도, 줄간격 170정도, 장평 100, 자간 0
- 4) 각주 : 글자 크기 9~10pt
- 5) 서체 : 명조체나 신명조체 류

- 6) 글씨색 : 흑색(수록 자료는 칼라 가능)
- 7) 페이지 표시는 각 면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아. 초록(ABSTRACT)

- 1) 초록(ABSTRACT)은 본문이 국문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한다.
- 2) 외국어로 논문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 3) 초록의 제목은 한 줄로 표기할 수 없을 때에는 둘째 줄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4) 부제는 제목의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 5) 제목 하단에 성명, 학과, 학교명을 기재한다.
- 6) 초록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 한다.

3. 제본 요령(논문제본 순서)(※반드시 순서에 따를 것)

외표지 - 간지 - 속표지 - 제출지 - 인준지 - 목차 - 외국어초록(본문이 국문일 경우) - 본문 - 참고자료 및 문헌 - 국문초록(본문이 외국어일 경우) - 간지 - 뒷표지

[별표 3]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제출자	과정		학 과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학과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 .

서 약 자 : (인)

확인자 : 지도교수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1(외표지) : 책등(측면) 및 앞표지

↑ 3cm ↓	논문 제 목	↑ 3cm ↓	← 3cm → ○ ○ 사 학위논문(14pt)
		↑ 2.5cm ↓	논문 제목(23pt)
		- 부제목 - (14pt)	
		○ ○ ○ ○ 년 ○ ○ 월 ○ ○ 일(14pt)	
		↑ 2cm ↓	전 북 대 학 교 대 학 원(16pt)
		↑ 1cm ↓	○ ○ 학과(14pt)
		↑ 1cm ↓	○ ○ ○ (성명)(16pt)
↑ 2cm ↓	2010.2.22 제출자	↑ 3cm ↓	

별지서식 2(속표지)

↑
6cm
↓

논 문 제 목(23pt)

- 부제목 -(14pt)

영 문 제 목(14pt)

- 영문부제목 -(14pt)

○ ○ ○ ○년 ○ ○월 ○ ○일(14pt)

↑
2cm
↓

전 북 대 학교 대 학 원(16pt)

↑
1cm
↓

○ ○학과(14pt)

↑
1cm
↓

○ ○ ○(성명)(16pt)

↑
3cm
↓

별지서식 3(제출지)

↑
6cm
↓

논 문 제 목(23pt)

- 부제목 -(14pt)

지도교수 ○ ○ ○(14pt)

이 논문을 ○○학 ○○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14pt)

○ ○ ○ ○년 ○○월 ○○일(14pt)

↑
2cm
↓

전 북 대 학교 대 학 원(16pt)

↑
1cm
↓

○ ○ 학과(14pt)

↑
1cm
↓

○ ○ ○(성명)(16pt)

↑
3cm
↓

별지서식 4(인준지)

↑
6cm
↓

○○○의 ○○학위논문을 인준함.(16pt)

↑
3cm
↓

위원장 ○○대학교 직급 ○○○ (인)(14pt)

위원 (인)(14pt)

위원 (인)(14pt)

위원 (인)(14pt)

위원 (인)(14pt)

○○○○년 ○○월 ○○일(14pt)

↑
1cm
↓

전 북 대 학 교 대 학 원(16pt)

↑
3cm
↓

※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3인

별지서식 5(초록)(19.12.26)

논문초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14pt)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11pt정도)

주요어 : (6단어 이내)(14pt)

2. 외국어초록(Abstract)

ABSTRACT(14pt)

제 목(14pt)

성 명(영문명)

학 과(영문명)

The Graduate Schoo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11pt정도)

keywords : (6단어 이내)(14pt)